

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학위취득 유예(졸업연기) 신청 안내

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학위취득 유예(졸업연기)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학위취득 유예 제도 운영 목적

- 가.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학위취득을 유예하여 사회진출 시기 조정
- 나. 개인별 부족한 학습경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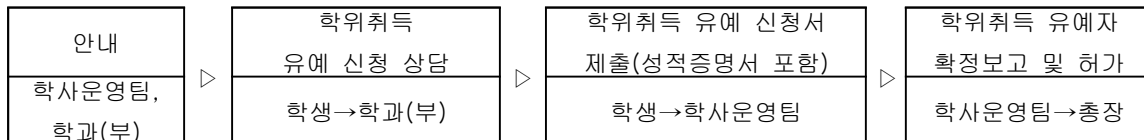
2.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자격 : 졸업요건을 충족한 2023년 2월 졸업예정자

(※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, 졸업이 불가함에 따라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유지되고 필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함)

3. 신청기간 및 제출처 : 2023. 1.30.(월) ~ 2. 3.(금) / 학사운영팀

4. 제출서류 :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

5. 학위취득 유예 제도 운영 절차



6. 유예기간 : 졸업예정일로부터 한 학기 이내 정규학기 단위(총 2회 가능)

7. 유예조건

- 가. 학위취득 유예 기간 내에는 휴학할 수 없음(학적변동불가)
- 나.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,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학점은 9학점까지 수강 가능(학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)

8. 유의사항

- 가. 수강신청을 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하며, 차기 졸업예정 시기에 학위를 수여함
- 나. 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(단, 본인의 사망, 부상, 질병, 군입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지도교수, 학과(부)장 확인 후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이 취소할 수 있음)
- 다. 등록금을 납부한 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한 경우의 등록금은 학칙 시행세칙 제2조를 따름
- 라. 금번 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학생은 2023년 8월 졸업대상이 됨(한 학기 유예)

2023. 1. 30.

교 학 처 장